

보건복지 제461호 (2026-02)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2. 23. ISSN 2092-7117

지원주택 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¹⁾

이상정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시설 중심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보호 체계로서 지원주택 기반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방안을 검토함.
-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적 진입 체계를 설계해야 함.
-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주택 기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보호조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그 이행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형태로 지원주택 기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01.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으며, 평균 약 12년 동안 가정외보호를 받음(이상정 외, 2023).

1) 이 글은 이상정, 조휘래, 임세희, 마한일. (2025).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각의 시설 운영 기준을 가지고 있음(「아동복지법」 제52조).
-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임(「아동복지법」 제3조).

◆ 국제규범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을 시설 입소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대규모 양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바탕으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유엔총회, 2009),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시설 중심의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가정위탁 중심의 아동 보호와 시설 기능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약 48%가 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4a), 2023년 12월 기준 1만 1,569명의 보호 아동·청소년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장기 보호를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2024b).

◆ 시설 중심의 가정외보호는 아동 인권 측면의 문제와 함께 다양한 보호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

- 시설 보호는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렵고,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경험이 제한되며, 성별·연령 등에 따른 분리로 인해 형제·자매·남매가 함께 지내기 어려운 환경 등의 한계가 있음.
- 또한 시설 부적응과 표류, 강제적 원가정 복귀 후 보호·자립지원 배제, 통고제도에 따른 보호처분 후 원적 시설 복귀 거부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보호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가정외보호 서비스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십대 후반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십대 후반 아동·청소년은 시설 입소 즉시 18세 이후의 보호종료에 대한 대비와 성인기 이행을 위한 자립 준비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여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중심 체계에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집중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려움.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기반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은 지역사회, 원가정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의료·돌봄·주거 유지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거 형태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통합 서비스임. 이는 특히 보호와 자립지원이 함께 필요한 십대 후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방안이 될 수 있음.
 - 형태와 특징에 따라 '중간주택'(임시 거주, 소규모 학습, 운영기관이 임차인이 됨, 독립생활과 자율적 선택권이 일부 제한됨, 예: 공동생활가정)과 '지원주택'(영구 거주, 독립 거주, 입주자 직접 계약, 완전한 독립생활과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 구분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주택은 그 특성상 중간주택과 지원주택의 경계에 있거나 지원주택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음(서종균, 2020).

〈표 1〉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시설과 지원주택

구분	시설	중간주택	지원주택
형태	단체생활 시설	임시 거주 주택	영구 거주 주택 (일부 주택은 중간주택으로 제공 가능)
특징	대규모 합숙	소규모 합숙, 서비스	독립 거주, 서비스
입주 계약	운영기관이 시설 확보	운영기관과 주택 공급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와 주택 공급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독립생활성	독립생활(X), 자율적 선택권(X)	독립생활(X, △), 자율적 선택권(△)	독립생활(O), 자율적 선택권(O)

자료: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연구", 이상정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6.

◆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주택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서비스는 고려된 바 없음.

- 지역사회 내에서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주거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개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주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노숙인지원주택, 서울시의 노인지원주택과 장애인지원주택 등이 대표적임.
- 국외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도 지원주택 기반 보호·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영국의 준자립주거(Semi-independent Living), 미국의 지원형 자립주거(Subsidized Independent Living) 사례가 대표적임.

◆ 시설 중심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 보호로 전환되도록 변화를 촉진하고,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02.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

◆ 시설 중심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보호 체계로서 지원주택 기반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지원주택 기반의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적 진입 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주택 기반 보호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에서는 자기결정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필수적인데, 「아동복지법」과 하위 지침에서 만 15세 이상을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15세 이상의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자립지원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15세 이상을 지원주택 기반 보호 가능 연령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영국과 미국은 모두 지원주택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적 공간’으로 정의하며, 진입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2023년 지원주거 규정(Supported Accommodation (England) Regulations 2023)’에 따라 만 1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청소년만을 지원형 주거(Supported Accommodation)의 대상으로 인정함. 16세를 ‘보호(care)’에서 ‘지원(support)’으로 전환되는 법적 경계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은 ‘전환기 자립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과 ‘체이피 위탁보호 프로그램(Chafee Foster Care Program)’ 등에서 만 16세 이상~22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주택 및 전환기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기관의 감독 아래 보호적 점유(protective occupancy) 형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영국의 가정외보호 유형별 연령 및 법적 기준

구분	주요 법령	연령 범위	보호 수준
아동의집 Children’s Home	아동의집 규정 Children’s Homes Regulations 2015	0~15세 (또는 돌봄 필요 16~17세)	보호(Care) 중심, 24시간 관리
지원 주거 Supported Accommodation: SILA	지원 주거 규정 Supported Accommodation Regulations 2023	16~17세	지원(Support) 중심, 자립훈련 단계
보호종료 주거 Care Leavers’ Housing	아동(보호종료) 법 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18~25세	자립지원(Aftercare) 중심, 부분 지원

출처: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 이상정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4.

원자료: “Children’s Homes (England) Regulations 2015 (United Kingdom), SI 2015/54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41/contents/made>; “Supported Accommodation (England) Regulations 2023 (United Kingdom), SI 2023/41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3/416/contents/made>; “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United Kingdom), c. 3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35>

- 단편적인 연령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연령 조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자립준비도(Self-Reliance Readiness)를 함께 고려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 자립생활 기술, 재정 관리, 사회적 관계망, 학업·직업 참여 정도,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강도 지원(High Support), 중강도 지원(Medium Support), 저강도 지원(Low Support)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주거 유형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영국은 고강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상주 인력이 있는 코어형 또는 군집형 주거를, 중강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2회 방문지원이 결합된 공유형 주거를 제공함. 또한, 자립 직전 단계의 낮은 수준의 지원 필요시 독립형 또는 호스트형 지원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음.

〈표 3〉 영국의 준자립주거 서비스 지원 수준

구분	특성	대상	서비스 내용
고강도 지원 High Support 레벨 1	복합적 욕구가 있거나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high-intensity) 지원 체계	• 가출·노숙 경험, 범죄·폭력 노출 등 고위험군 •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사용 등 복합적 욕구 보유자	• 24시간 상주 인력(staff on-site) 배치 및 즉시 대응 • 일일 또는 주 3회 이상 사례관리 •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수립 및 위기 대응 • 정신건강·중독 문제 중재 • 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중강도 지원 Medium Support 레벨 2	일정 수준의 자립 역량은 있으나 정기적 지도와 생활기술 훈련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 자기관리 가능하나 지속적 지지 필요 • 낮은 빈도의 중재로 일상 유지 가능	• 주 1~2회 핵심 인력(Key Worker)의 정기 방문 및 사례관리 • 예산 관리, 식사 준비 등 생활기술 훈련 • 문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운영 • 학업·고용 연계 지원 병행
저강도 지원 Low Support 레벨 3	자립 직전 단계의 비교적 안정적인 청(소)년 대상의 저강도(low-intensity) 지원 체계	• 안정적 일상과 자기관리 가능 • 독립생활로 이행 준비 중인 청년	• 비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 인력(off-site staff) 운영 • 월 1회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 이동 지원(Floating support) 기반 자율관리 • 퇴거 전 최종 자립 점검(final independence review) 실시

자료: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 이상정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1.

원자료: "Guide to the supported accommodation regulations including quality standards",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a,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14400088281e000db4e965/Guide_to_the_supported_accommodation_regulations_including_quality_standards.pdf; "Providing supported accommod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Guidance",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b,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viding-supported-accommodation-for-children-and-young-people>; "Registration of supported accommodation for 16- and 17-year-olds", Ofsted, 2023, <https://www.gov.uk/guidance/registration-of-supported-accommodation-for-16-and-17-year-olds>

◆ **주거를 위한 계약이 가능한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주택 기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주거지원 관련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주거정책만으로는 '아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 보호조치, 배치 결정, 사례관리, 퇴거 통제와 같은 실질적인 행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지원주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의 핵심 법률에 "지원주택에서 보호·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주거를 아동 보호의 공식 수단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고, 친권자가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또한 부모 세대와 분리된 독립 세대인 아동·청소년은 각종 급여·주거지원 신청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보호와 자립 과정에서 생활의 연속성이 담보되고 보호조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포함하는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그 이행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영국과 미국의 '보호적 점유(protective occupancy)' 제도를 참고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국에서 아동·청소년은 「1998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20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거주할 권리(right to be accommodated)’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 지원주거 규정에 의해 임의퇴거 금지, 사전 통지, 대체 주거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됨.
- 미국은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과 전환기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침에서 16세 이상~22세 이하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연방 및 주정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의 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는 기관 명의로 된 점유계약(occupancy agreement)하에서 ‘보호적 점유’ 권리를 인정받으며, 프로그램 종료나 규정 위반이 없는 한 임의로 퇴거당하지 않음.

◆ **아동 보호조치의 하나로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지방 정부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거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주거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보호대상아동 또한 주거약자에 포함해야 함.
 -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과 같은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7호의 주거약자로는 장애인, 고령자만을 언급하고 있음.
- 지침 등의 기존 행정규칙을 활용, 변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우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중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제4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특례(제38조)를 활용하여 주거 공간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참고하여 「아동복지법」상 지원주택형 보호조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용 특례의 입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음.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여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나 보증금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원주택 기반 아동 보호의 핵심은 시설 밖의 보호를 실현하되, 기존의 보호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음.**

-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지원주택을 보호조치의 한 형태로 도입할 경우 보호 결정과 집행, 이후의 사례관리가 일관된 행정행위로 연결되어야 제도의 실효성과 아동 보호, 자립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현행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고려할 때, 아동보호팀이 직접 사례관리의 주체가 되어 보호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자립 이행까지의 전 과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거 유지 지원’을 중심축으로 하여 일상생활, 교육·고용, 금융, 건강, 심리·정서, 지역사회 관계, 권리 옹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설계해야 함.
 - 주거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예: 주거 탐색과 입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공과금 납부, 시설 관리와 수선, 가구 및 생활용품 구비·수선비용 등)과 생활 지원(예: 일상생활 기술(청소, 요리, 시간 관리 등), 금전 관리 및 저축 상담, 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 학업 지속 및 진로 탐색, 취업과 근속 유지 등)이 필수적임.
 - 미성년자는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법적 행위능력의 제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조력 지원(decision support)’ 체계가 필요함.
 - ‘의사결정 조력’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판단을 대신 혹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의견을 형성,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임.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사례관리자의 의사결정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03.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언

- ◆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는 시설 중심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연속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장치로 검토되어야 함.
 - 특히 보호가 필요한 시점과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중첩되는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호 단계에서부터 주거, 자립생활, 의사결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기존 보호 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완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지원주택을 주거정책이 아닌 아동보호정책의 범주 안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체계에 지원주택을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인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주거 안정, 퇴거 통제, 보호의 지속성을 공적 책임 아래 확보할 수 있음.
- ◆ 지원주택 기반의 가정외보호 체계는 보호대상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 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선택권과 참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반면, 지원주택 기반의 보호는 생활 공간과 지원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음.
 - 특히 만 15세 이상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연령²⁾으로 지원주택 입주 여부, 주거 유형, 서비스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지원주택 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관련 논의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복지 체계, 법무부의 소년 보호 체계로 확대, 통합되어야 함.

2)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2026년 2월 10일 인출) 의사 결정 가능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는 서로 다른 근거법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로 관할 부처가 분절되어 있어, 유사 위기를 경험하는 동일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어느 부처의 제도 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보호의 방식과 자립지원의 연속성이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공공의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이 동일한 지원주택 기반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근거법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일원화하고, 보호조치의 주체이자 실행 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a).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 보건복지부. (2024b). **아동복지시설 현황 1, 2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3959
- 유엔총회. (2009).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64차 총회 결의안 A/RES/64/434], 아동권리보장원 번역.
- 이상정, 김수진, 이주연, 임성은, 함선유, 김지선, 김지연, 주영선, 하태정, 주하나. (2023).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조희래, 임세희, 마한얼. (2025).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종균. (2020).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현황과 청소년 지원주택의 도입 가능성**.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2020. 8. 27. 주최: 서울주택도시공사.
- 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United Kingdom), c. 3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35>
- Children's Homes (England) Regulations 2015 (United Kingdom), SI 2015/54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5/541/contents/made>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a). *Guide to the supported accommodation regulations including quality standards*. GOV.UK.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14400088281e000db4e965/Guide_to_the_supported_accommodation_regulations_including_quality_standards.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b). *Providing supported accommod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Guidance*.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viding-supported-accommodation-for-children-and-young-people>
- Ofsted. (2023). *Registration of supported accommodation for 16- and 17-year-olds*. GOV.UK. <https://www.gov.uk/guidance/registration-of-supported-accommodation-for-16-and-17-year-olds>
- Supported Accommodation (England) Regulations 2023 (United Kingdom), SI 2023/41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3/416/contents/made>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A0%9C52%EC%A1%B0>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EC%A0%9C3%EC%A1%B0>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2314&ancYnChk=0#0000>

집필 이상정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9136